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51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김선민 · 서미화 · 강경숙
허성무 · 김 윤 · 정춘생
이해민 · 남인순 · 김재원
이주희 · 소병훈 · 전종덕
김준형 · 최혁진 · 신장식
서왕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법률 제 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소아 뇌졸중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발달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u>다.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소아 뇌졸중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u>
<u>다.</u> (생 략)	<u>라.</u> (현행 다목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